

의안번호	제1947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

의결사항

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제안자	이경노 의원
제안연월일	2023. 3. 3.

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947호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3. 3.

제 안 자 : 이경노 의원

1. 제안이유

-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·부녀회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 수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회의수당 신설(안 제4조 제2항)

3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4. 관계법령(또는 참고자료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「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」

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,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예산의 지원) (생략) ② <신설>	제4조 (예산의 지원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 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 우,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 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

[관계법령]

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